

인증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6. 28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20. 03. 05

개정 2020. 10. 13

개정 2022. 06.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관 제34조 제1항 및 제3항과 인증규정 제8조에 따라 인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 “원장”)이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수의학교육인증규정 제9조에 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 10명 내외를 원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③ 인증평가 대상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인증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회의에 회부한다.

② 평가단장은 자체평가서 검토와 현장방문 조사업무를 주관하고 평가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과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증대상기관 선정
2. 서면평가서 심의
3. 방문평가보고서(예비논평서 포함) 심의
4. 최종보고서(최종논평서 포함) 심의
5. 중간보고서 심의 등 기타 위원회 업무 관련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인증평가 업무 일정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업무 중 위원의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위원회가 지불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① 인증평가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인증대상 여부를 인증평가신청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14일 이내에 수의학교육인증원이 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의 인증평가 신청은 2년간 유예한다.

제6조(서면평가) ① 자체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는 위원 개인의 영역별 평가와 평가단 전체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서면평가서에는 방문평가 시 확인할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③ 서면평가는 60일 이내에 종료한다.

제7조(판정종류) ①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시 판정은 우수, 적격, 미흡, 부적격으로 한다.

② 인증기준 5개 영역이 모두 적격 이상인 경우 완전인증으로 판정한다.

③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인증기간을 축소하여 인증으로 판정한다.

④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2~3개 영역에서 미흡인 경우 한정인증으로 판정한다.

⑤ 인증기준 5개 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부적격인 경우 또는 4개 영역 이상이 미흡인 경우 인증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수의학교육인증규정 제9조를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인증평가 교육을 받은 이수자 중에서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은 자체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이에 따른 방문평가를 수행한다.

③ 평가는 인증기준 영역별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와 평가단 전체 평가로 이

루어진다.

- ④ 평가단장은 방문평가 마지막 날 부족사항설명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 ⑤ 방문평가 조사는 3일 이내에 종료한다.
- ⑥ 인증대상 기관은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에 부족사항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를 평가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⑦ 답변서의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나 역량을 문서화한 것에 한하며, 계획이나 기대하는 성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⑧ 평가단장은 답변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인증평가를 종료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인증평가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인증평가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서 작성자와 평가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 ③ 자체평가서 작성자는 인증신청대학의 추천을 받고, 평가위원 지원자는 공모한다.
- ④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
- ⑤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 ⑥ 연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인증의 국내외 현황, 비전, 목적, 인증기준, 판정기준, 보고서 작성법, 윤리적 가치와 태도 등을 포함한다.
- ⑦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자신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직계가족 등이 관계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① 위원회가 평가·인증 심의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인증판정위원회에 방문평가보고서(예비논평서 포함) 및 최종보고서(최종논평서 포함)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모든 위원과 평가단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인증평가 과정 중 취득한 어떤 사실에 대하여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